서울을 이끄는 송파

송파구보

송파구 홈페이지 | www.songpa.go.kr

2019. 4. 11.(목) 제1641호



※ 송파구보 발행 안내

· 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.

·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(http://www.songpa.go.kr)에 게재합니다.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송파구 SONGPA-GU

발행인 : 송파구청장

편집인 : 홍보담당관(☎ 02-2147-2260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(신천동)

차 례

◉ 고 시

제54호 문정동136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····· 3
제5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정정고시 ····· 7

◉ 공 고

제612호 부의안건 공고 ····· 9
제618호 송파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····· 10
제623호 부의안건 공고 ····· 11
제6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 12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-54호

문정동136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96호(2017. 07. 06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문정동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64,974.4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정수희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4, 3층(문정동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년 4월 3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대지면적 (㎡)	동 수 (포함)	층 수	세대수	건폐율 (%)	용적률 (%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용 도
공동주택 (아파트)	44,058.7	14개동	지하2층 지상18층	1,265	21.36	246.55	9,506.34	166,166.77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근린생활시설 (상가)	445.0	(2)개동	지하1층 지상1층	-	-	-	-	1,674.84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▸ 공동주택

구분	타입	전용면적 (㎡)	공급 세대수	분양 세대수			
				조합원 분양	일반분양	임대	보류지
공동 주택	49A	49.92	206	63	66	74	3
	49B	49.40	144	30	111	0	3
	59A	59.94	370	349	15	6	0
	59B	59.87	135	92	43	0	0
	74A	74.95	188	182	6	0	0

구분	타입	전용면적(㎡)	공급세대수	분양 세대수			
				조합원 분양	일반분양	임대	보류지
	74B	74.43	70	43	25	0	2
	74C	74.96	49	29	20	0	0
	84A	84.97	68	68	0	0	0
	84B	84.98	35	35	0	0	0
	합 계		1265	891	286	80	8

▸ 근린생활시설(상가)

분양대상	분양면적(㎡)	비 고
일반분양	1,674.84	
합 계	1,674.84	

▸ 분양용지

구 분	규모(㎡)	소유자	용 도	필지수	무상양여(㎡)	비 고
1	44,058.7	사업시행자	공동주택	1	-	재건축 소형주택 포함
2	445.0	사업시행자	근린생활시설		-	
합 계	44,503.7		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용 도 폐 지			
종류	규모(㎡)	관리청	종류	규모(㎡)	국공유지(㎡)	무상양여(㎡)
도로	8,430.9	송파구(서울시)	도로	16,313.7	16,313.7	9,778.1
공원	5,091.8	송파구	-		-	-
합계	13,522.7		합계		16,313.7	9,778.1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

▸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약 12개월 이내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147-2896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-55호

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-49호(2019.3.26.)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에 대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고 시 명 :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정정고시

2. 정정내용 : 등록번호 및 처분사유 정정

3. 고시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연번	등록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일자
1	서울-주대 2014-0048	㈜대유산업**	박*백외 1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**길 3-16(오금동)	경고	연보고현황 미제출	2019.03.26
2	서울-주대 2018-0004	㈜에이엔***	안*훈	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***, 에이동 1012호(문정동, 문정역테라타워)	경고	연보고현황 미제출	2019.03.26
3	서울-주택 1996-0066	건주**건설(주)	김*백	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***, 4층(송파동)	영업정지 1개월 (2019.4.1.~4.30)	연보고현황 미제출 (경고누적)	2019.03.26

연번	등록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일자
4	서울-주택 2013-0024	이엔텍**(주)	양*룡	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**, 비동 201호(문정동)	영업정지 1개월 (2019.4.1.~4.30)	연보고현황 미제출 (경고누적)	2019.03.26
5	서울-주택 2014-0164	㈜조동**건설	전*진	서울시 송파구 오금로**길 10, 5층(방이동, 풍산빌딩)	영업정지 1개월 (2019.4.1.~4.30)	연보고현황 미제출 (경고누적)	2019.03.26
6	서울-주택 2016-0068	㈜디케이**** *	신*원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**길 5, 2층(가락동, 천심빌딩)	영업정지 1개월 (2019.4.1.~4.30)	연보고현황 미제출 (경고누적)	2019.03.26
7	서울-주택 2016-0079	㈜청우*****	정*원	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**, 406호(문정동, 파트너스2)	영업정지 1개월 (2019.4.1.~4.30)	연보고현황 미제출 (경고누적)	2019.03.26

4.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주택과(☎02-2147-29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-612호

부의안건공고
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	재 무 과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-618호

부 의 안 건 공 고

1. 『지방자치법』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구 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규약 동의	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	일자리정책 담당관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-623호

부 의 안 건 공 고
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연번	구분	부 의 안 건 명
1	조 례	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		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3		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4		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5		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6		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-643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'제로페이'를 송파구 구민회관 대관료 결제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신설(안 제6조제3항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'제로페이'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 구민회관 시설 이용자에 대해 대관료를 감면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(참조: 총무과장, 주소: (05552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(전화: 02-2147-3565, 팩스: 02-2147-38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및 의견사항 등

※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송파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)으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를 경감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【별표】

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〔제5조 관련〕

시설 명		1회이용 가능시간	사용료 (원)	비 고
기본시설	대 강 당	3시간이내	130,000	▫ 공휴일은 기준액의 50% 가산 적용(기본시설에 한함) ▫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준액의 50%로 감액적용 ▫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초과사용 1시간당 기준액의 50%씩 가산 ▫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를 감액 적용
	소 강 당	〃	60,000	
	강 의 실	〃	30,000	
전시시설	제 1 전 시 실	8시간이내	150,000	
	제 2 전 시 실	8시간이내	100,000	
부속시설	영 사 기	1회(3시간)	20,000	
	빔 프 로 젝 트	〃	20,000	
	음 향 기 기	〃	10,000	
	무 대 조 명	〃	10,000	
	피 아 노	1시간	5,000	
	냉 난 방	1시간	20,0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6조(사용료 감면) ①~② (생 략)
<신 설></td><td>제6조(사용료 감면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)으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를 경감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【별표】
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(제5조관련)
<table><tr><th colspan="2">시 설 명</th><th>1회이용 가능시간</th><th>사용료 (원)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기본시설</td><td>대 강 당</td><td>3시간이내</td><td>130,000</td><td rowspan="10">▫ 공휴일은 기준액의 50% 가산적용(기본시설에 한함)
▫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준액의 50%로 감액적용
▫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초과사용 1시간당 기준액의 50%씩 가산</td></tr><tr><td>소 강 당</td><td>〃</td><td>60,000</td></tr><tr><td>강 의 실</td><td>〃</td><td>3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전시시설</td><td>제1전시실</td><td>8시간이내</td><td>150,000</td></tr><tr><td>제2전시실</td><td>8시간이내</td><td>10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부속시설</td><td>영 사 기</td><td>1회(3시간)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빔프로젝트</td><td>〃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음향기기</td><td>〃</td><td>10,000</td></tr><tr><td>무대조명</td><td>〃</td><td>10,000</td></tr><tr><td>피 아 노</td><td>1시간</td><td>5,00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냉 난 방</td><td>1시간</td><td>20,000</td></tr></table></td><td>【별표】
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(제5조관련)
<table><tr><th colspan="2">시설명</th><th>1회이용 가능시간</th><th>사용료 (원)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기본시설</td><td>대 강 당</td><td>3시간이내</td><td>130,000</td><td rowspan="10">▫ 공휴일은 기준액의 50% 가산적용(기본시설에 한함)
▫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준액의 50%로 감액적용
▫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초과사용 1시간당 기준액의 50%씩 가산
▫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를 감액 적용</td></tr><tr><td>소 강 당</td><td>〃</td><td>60,000</td></tr><tr><td>강 의 실</td><td>〃</td><td>3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전시시설</td><td>제1전시실</td><td>8시간이내</td><td>150,000</td></tr><tr><td>제2전시실</td><td>8시간이내</td><td>10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부속시설</td><td>영 사 기</td><td>1회(3시간)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빔프로젝트</td><td>〃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음향기기</td><td>〃</td><td>10,000</td></tr><tr><td>무대조명</td><td>〃</td><td>10,000</td></tr><tr><td>피 아 노</td><td>1시간</td><td>5,00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냉 난 방</td><td>1시간</td><td>20,000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관 계 법 령

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사용료)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② 사용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사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
2.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
3.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다른 법령에서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